

## (방과후학교 강사) 17개 시·도교육청 Q&A

<'21.7.23.(금) 근로복지공단 전국민고용안전망강화추진TF>

Q1	'21년도는 같은 동일지역에서 활동하는 방과후 강사 소득 합산이 이뤄지는지요?
A1	<p>- (원칙) 사업주별* 당연적용자(월보수 80만원 이상자)만 피보험자격 관리합니다</p> <p>* 국립→정부부처 장관, 공립→시·도 교육감, 사립→학교법인, 업체위탁→위탁사(개인 또는 법인)</p> <p><b>국공립</b>의 경우, 예산, 학교별 계약 및 수강료 지급 등 여러 쟁점을 고려하여 <b>'21년 하반기(7월~12월) 기간만</b> 학교단위 종사자 전원 취득·상실신고, 월보수 통보를 하면 '22.2월 공단에서 당연적용 여부(사업주별 월보수 80만원 이상)를 확인 후 취득·상실일 검증, 6개월간의 월별보험료를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2.2월 중순 '22.3.10. 납부 기한으로 고지서를 송부할 예정입니다.</p> <p>- 아울러 '22.1.1.부터는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종사자(월보수 80만원 미만자)가 중복계약에 따른 소득합산을 신청하여 합산한 월보수가 8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p> <p>* (신청기한) 월보수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인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함</p>
Q2	현장교육은 어떻게 어떤 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A2	-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 설명회 개최등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Q3	근로자-방과후학교강사로 활동하는 경우 근로자, 특고로 각각 취득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업장내 활동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건가요?
A3	<p>-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자, 특고로 모두 계약한 경우에는 근로자로만 자격을 취득하고</p> <p>- 사업주A와 근로자로 계약, 사업주B와 특고로 각각 계약한 경우에는 모두 자격을 취득합니다.</p> <p>* (사업주) 국립→정부부처 장관, 공립→시·도 교육감, 사립→학교법인, 업체위탁→위탁사(개인 또는 법인)</p>

Q4	소득 계산 시 현재 종합 소득세 3.3%를 공제하지 않고 보험료를 정하는지 문의 드림
A4	<p>- 보험료 산정대상인 월보수는 강사료(=노무제공계약에 따른 대가로서 소득세법상 총지급액<sup>❶</sup>)에서 비과세소득<sup>❷</sup>과 경비<sup>❸</sup>를 공제한 금액입니다.</p> <p>❶ 노무제공에 따른 대가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제19조) 또는 기타소득(제21조)          ❷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❸ 실제 경비가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공제율로, '21년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18.4%임</p> <p>● 월보수액 예시</p>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 5px 0;"> <p><b>보수액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b> → 직종별 경비율 고시: 18.4%</p> <p>21.7.1.부터 7.31.까지 발생한 총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math>100\text{만원} - (100\text{만원} \times 18.4\%) = 100\text{만원} - 184,000\text{원} = 816,000\text{원}</math>            - (원칙)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므로 8.15.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해야 함</p> </div>

Q5	7~12월까지 납부유예기간에 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하나요?
A5	<p>- 공단은 법령에 따라 국공립의 경우, 사업주별 종사자의 월보수액이 80만원~13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학교별 보수 비중에 따라 133만원(하한보수)을 적용하게 되고, 133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보수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p> <p>- 또한, 고용보험료의 원천징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6제5항에 사업주가 종사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종사자 부담분을 산정하여 원천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p> <p>- 다만, 이번 납부유예에 따라 원천공제 시기·방법은 교육부 등 사업주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간 학교 등 문의가 있어 고민해 보고 아래와 같이 예시적으로 말씀드리니, 교육부 내부적으로 함께 의견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p>

	<p>(예시1) '22.2월 부과된 총 보험료 중 종사자 부담분을 '22.2월 일시 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단 토탈서비스 내 종사자별 보험료 부과내역(종사자 부담분 포함) 조회 가능</li> </ul> <p>(장점) 공제 업무 편이</p> <p>(단점) '21년 하반기 내 상실자의 경우 사업주가 원천공제분을 개별 산정해야 하는 부담, 종사자 6개월치 부담분 일시 공제로 부담 가중</p> <p>(예시2) 매월 실보수에 0.7% 곱하여 원천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점) 매월 실보수 즉시 공제로 산정 편이</li> <li>(단점) '22.2월 공단 보험료 부과시 차액분 발생 가능</li> <li>* 국공립의 경우 사업주별 종사자의 합산보수가 80만원~133만원 미만인 경우 보수비중에 따른 133만원 적용 시 종사자 부담분 증가됨</li> </ul> <p>(예시3) 133만원 미만의 경우를 대비해 0.7%가 아닌 그 이상의 금액을 원천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0만원 시 0.7%를 133만원 시 공제비율로 환산하면 1.16% 정도임</li> <li>(장점) 예시2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22.2월 추가 납부 시 원천공제 부족 문제 해소</li> <li>(단점) 종사자 부담분 가중, 학교의 '22.2월 종사자 기존 원천공제액 개별반환 업무 가중</li> </ul>
--	---

Q6	a학교에서 근로자, 방과후학교 강사로 일하면 이중취득을 안하고 a학교에서 근로자, b학교에서 강사로 일하면 이중취득을 하는 거죠? 이 경우엔 어느 보험 가입을 우선해야 되나요?
A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종사자가 계약한 사업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li> <li>* (사업주) 국립→정부부처 장관 공립→사도 교육감, 사립→학교법인, 업체위탁→위탁사(개인 또는 법인)</li> <li>-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자, 특고로 모두 계약한 경우에는 근로자로만 자격을 취득하고</li> <li>- 사업주A와 근로자로 계약, 사업주B와 특고로 각각 계약한 경우에는 모두 자격을 취득합니다.</li> </ul>

Q7	동일인이 교육감 소속교 + 사립학교 소속교 합산 되나요?
A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별 당연적용여부(월보수 80만원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li> <li>* (사업주) 국립→정부부처 장관 공립→사도 교육감, 사립→학교법인, 업체위탁→위탁사(개인 또는 법인)</li> <li>- 질문상 공립과 사립의 경우로 이 경우는 합산하지 않습니다.</li> </ul>

Q8	사립은 법인별 신고한다고 했는데 공립과 사립학교 모두 강의하는 강사는 80만원이 넘어도 고용보험 대상자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A8	- 네, 맞습니다. 이 경우는 합산하여 판단하지 않고, 각각 사업주별 월보수가 80만원 이상인 경우 취득신고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 국립→정부부처 장관 공립→사도 교육감, 사립→학교법인, 업체위탁→위탁사(개인 또는 법인)

Q9	1) 7.1 이후 성립신고 후 7월 80만원이 안되는 분은 8월 80만원이 넘을 것이 예상되어도 일단 상실신고를 해야할지요? 2) 6개월간 유예를 통해 소득을 살펴본다고 했는데 평균 6월 보수를 보는 것이 아닌 각 월별로 80만 기준으로 취득, 상실로 각 월별로 본다는 의미인지요?
A9	- 1) 7월 강의한 이후 보수는 8월에 산정되므로 7월 월보수가 80만원 이상인 경우만 취득신고(8.15.기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매월도 추정보수로 취득상실하지 않고 강의를 한 달의 다음달에 보수를 확인하여 상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공립의 경우에는 21년 하반기 동안 종사자 전원을 취득상실신고하고 매월 월보수 신고하시면 22년 2월에 취득·상실일을 확인하고 월별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2) 네, 맞습니다. 매월 신고해주시는 월보수로 산정합니다,

Q10	고용보험 사업주 구분을 교육부, 교육청, 민간위탁으로 하였음. 보통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용역을 위탁하는 단체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용역위탁 사업체'임.
A10	- 기존 작성된 문서외 향후 신규로 작성하는 경우 방과후학교 운영길라잡이 상 용어인 "업체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Q11	<p>동일강사가 여러 학교에 강사로 활동하는 경우 소득기준을 합산해서 8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지 아니면 학교별 80만원 미만이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산해서 80만원이 넘는 경우 고지는 학교별로 어떻게 산정되어 부과되는지요?</p>
A11	<p>- (국공립) 학교별 종사자를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모두 취득·상실 신고, 취득자 전원에 대한 월보수액을 노무제공월의 다음월 말일까지 모두 신고.</p> <p>↳ 공단이 22.2월 사업주별 종사자의 취득·상실일을 확인하여 6개월간 월별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납부기한: 22.3.10.)</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00시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A, B, C와 노무제공계약(7.1.~)을 동일기간 중복한 경우</p> <p>1) 7월 보수가 A(50만원), B(30만원), C(20만원) 인 경우(이하 매월 동일 가정)</p> <p>※ 사업주가 00시교육청으로 동일하므로 7월 합산보수는 100만원이나, 하한보수 133만원보다 작으므로 하한보수로 보험료 산정</p> <p>- 7월보험료 산정 예시</p> <p>A학교 = <math>(\frac{50\text{만원}}{100\text{만원}} \times 133\text{만원}) \times 0.7\% + (\frac{50\text{만원}}{100\text{만원}} \times 133\text{만원}) \times 0.7\%</math>  = 4,650(원단위 절사) + 4,650(원단위 절사) = 9,300원</p> <p>B학교 = <math>(\frac{30\text{만원}}{100\text{만원}} \times 133\text{만원}) \times 0.7\% + (\frac{30\text{만원}}{100\text{만원}} \times 133\text{만원}) \times 0.7\%</math>  = 2,790(원단위 절사) + 2,790(원단위 절사) = 5,580원</p> <p>C학교 = <math>(\frac{20\text{만원}}{100\text{만원}} \times 133\text{만원}) \times 0.7\% + (\frac{20\text{만원}}{100\text{만원}} \times 133\text{만원}) \times 0.7\%</math>  = 1,860(원단위 절사) + 1,860(원단위 절사) = 3,720원</p> <p>2) 7월 보수가 A(50만원), B(50만원), C(50만원) 인 경우(이하 매월 동일 가정)</p> <p>※ 사업주가 00시교육청으로 동일하므로 7월 합산보수는 150만원이고, 하한보수 133만원보다 크므로 실보수 150만원으로 산정</p> <p>- 7월보험료 산정 예시</p> <p>A학교 = 50만원 × 0.7% + 50만원 × 0.7% = 3,500원 + 3,500원 = 7,000원</p> <p>B학교, C학교 동일</p> </div> <p>- (사립, 업체위탁) 원칙적으로 사업주별(학교가 2이상 이더라도 학교단위 신고 불가) 종사자의 월보수 80만원 이상인 경우만 취득·상실신고하고, 월보수액을 통보하여야 함(이 경우도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22.2월 6개월간 월별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납부기한: 22.3.10.))</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사립학교 A와만 노무제공계약(7.1.~)을 체결한 경우</p> <p>1) 7월 보수가 100만원인 경우(100만원&lt;133만원이므로 133만원으로 보험료 산정)</p> <p>7월 보험료: 133만원 × 0.7% + 133만원 × 0.7% = 9,310 + 9,310 = 18,620원</p> <p>2) 7월 보수가 200만원인 경우(200만원&gt;133만원이므로 실보수 200만원으로 보험료 산정)</p> <p>7월 보험료: 200만원 × 0.7% + 200만원 × 0.7% = 14,000 + 14,000 = 28,000원</p> </div>

Q12	월소득 신고 단체 등록 양식이 있는지요?
A12	- 월평균보수(월보수) 통보서가 법정 서식입니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내 월보수 통보 신고화면을 8월초 오픈하게 되는데, 엑셀양식을 다운받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Q13	학교와 계약을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강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원청에서 고용 보험 납부를 할 수 있나요?
A13	- 통상 계약자가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계약자와 지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득세법 상 소득세를 원천공제하여 신고하는 자는 누구인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사업자번호 확인 필요) - 다만, 이런 경우라도 공립의 경우 동일사업주내 학교와 교육감의 관계라면 학교가 취득신고하여 고지서를 받고 납부할지, 교육감이 취득신고하고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지는 내부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혹, 학교가 취득신고 등 보험사무를 하더라도 고지서를 교육청으로 송부하여 교육청이 납부하는 등 절차도 가능하겠지요)
Q14	학교에서 월보수액 신고를 할 때 필요경비 18.4%를 공제하지 않은 강사료 총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을텐데, 월 보수액 신고시 방과후학교 강사 코드 적용시 필요경비를 자동으로 반영하거나 연수 자료에 강조하여 안내 부탁드립니다
A14	- 법령상 직종별 공제율을 곱하여 공제한 금액인 월보수액을 신고하게 되어 있고, 일부사업주의 신고 오류를 고려하여 시스템을 수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숫자만을 기재하거나 입력하시므로 신고 오류를 어떤 경우로 정의할 수 없어서입니다.
Q15	근로자의 4대보험 신고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edi 등에서 신고한 사람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 현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토탈서비스에서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듯 합니다.
A15	- 토탈서비스 내 정보조회에서 "근로자 고용정보현황조회"화면에서 관리번호, 근로자구분을 "특수"로 선택하시어 조회 가능하십니다.

Q16	22년부터 노무제공자가 직접 합산 신청 가능한데, 각 학교에서는 해당 노무제공자가 타 기관에서 노무제공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이라도(적용대상제외)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닌지 여쭙습니다.
A16	<p>- '22.1.1.부터는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b>종사자(월보수 80만원 미만자)가 직접</b> 중복계약에 따른 소득합산을 <b>신청</b>하여 합산한 월보수가 8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노무제공자가 신청하므로 사업주(또는 학교)가 타 학교 정보를 모른다고 하여 문제되진 않습니다. 또한 취득시 통지는 각 사업주, 종사자 모두에게 통지됩니다.</p> <p>* (신청기한) 월보수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인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함</p>
Q17	위탁사업자 사업주들은 고용보험 납부 의무를 지키는 지는 고용보험공단에서 감독하시는 거죠? 사업주 부담금 납부 및 납부 교육 등을 학교에서 신경 안쓰셔도 되겠죠?
A17	<p>- 사업주의 성실신고에 따라 우선 종사자의 피보험기간과 보험료 산정이 되며,</p> <p>-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종사자가 직접 자격을 신고하거나, 자격에 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 조사의뢰가 된 경우에는 공단이 직접 조사합니다.</p> <p>- 다만 현장의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 또는 교육청 등에서 가입증명원, 납부 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하시는 것도 염려하시는 신고의무 회피 등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p>
Q18	분기마다 강사료를 지급받는 강사의 경우, 강사료를 지급받지 않았지만 해당 월에 해당하는 월보수액을 계산하여 월보수액 신고하면 되는지요? 해당 경우도 사례로 추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A18	<p>- 매달 강의 수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료에 대한 월보수액은 산정이 가능하고, 다만 지급을 분기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실보수를 월단위로 신고해 주시고,</p> <p>- 부득이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분기 지급액을 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습니다.</p> <p>- 그러나,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시 심의 내용등을 살펴보면, 강의요일, 시간 등이 명확히 있어 충분히 산정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p>

<p>Q19</p>	<p>1. 학교에서 강사료만 지급하고, 별도 경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필요경비 18.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서 신고해야되나요?</p> <p>2. 월보수액통보시 '노무제공일' 의 기준은 실제 강사활동일인지, 강사료지급일 인가요? 예) 7월에 강사활동하고, 8월 첫주에 강사료를 지급받은 경우, 보수액통보를 8.31.까지 하면되는지?</p> <p>3. 초등학교 내 특수학급 담당 방과후학교 강사도 가입대상인가요?</p> <p>4. a학교 근로자(공무직 스포츠강사), b학교 강사로 활동하는 경우 고용보험 이 중취득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a,b학교가 동일 교육감 소속 학교인 경우엔 이 중취득 대상이 아닌거죠?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하셔서 구분하여 안내해주 셴으면 좋겠습니다!</p>
<p>A19</p>	<p>- 1) 네, 노무제공에 따른 대가 즉, 강사료에 직종별 경비율 18.4%를 곱하여 공제 하시면 됩니다.</p> <p>- 2) 실제 강의를 한 날을 말하며, 예시 질문상 8.31.까지 월보수액을 통보하시면 됩니다.</p> <p>- 3) 아래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 여부로 판단하시면 됩니 다.</p> <p>* ②의 경우 방과후학교운영계획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준수한 강의 여부 등 판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b>9.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b></p> <p><b>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강사&lt;교육부 회시자료&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학교에서 운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가 운영주체</li> <li>- ② 방과후학교 과정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와 이에 근거한 교육부 고시(제2015-74)에 따라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과정(방과후학교 길라잡이 적용)</li> <li>- ③ 담당하는 강사 : 학교(교육청 포함) 혹은 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맺은 '방과후 학교' 강사(노무제공자)</li> </ul> </div> <p>- 4) 네, 동일 교육감 내 공립학교는 근로자로만 취득됩니다.</p>



Q20	강사가 00시교육감 소속 공립(2개교 모두), a학교 50만원, b학교에서 60만원 강사료를 받는 경우 고용보험료는 두학교 모두에게 그 비율만큼 고지하는가요?
A20	<p>- 네 맞습니다. 이 경우 모두 7월 보수라면 월보수는 110만원이고 당연적용이며, 보험료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p> $A\text{학교} = \left(\frac{50\text{만원}}{110\text{만원}} \times 133\text{만원}\right) \times 0.7\% + \left(\frac{50\text{만원}}{110\text{만원}} \times 133\text{만원}\right) \times 0.7\%$ $B\text{학교} = \left(\frac{60\text{만원}}{110\text{만원}} \times 133\text{만원}\right) \times 0.7\% + \left(\frac{60\text{만원}}{110\text{만원}} \times 133\text{만원}\right) \times 0.7\%$

Q21	국세청에 매달 소득신고를 한다면, 향후 고용포털에 자료 연계가 가능한지요?
A21	<p>- 현재 공단과 국세청간 방과후학교 강사의 사업소득신고 자료 연계를 추진 중입니다. 전산시스템은 22.7월 구축개시를 목표로 합니다.</p> <p>- 이를 위해 기재부는 방과후학교 강사의 간이지급명세서 상 소득신고 주기를 매월 단위로 변경(신고기한은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하고 업종코드도940925(방과후강사)를 신설하여 21.7.월 지급분부터 21.8.31.까지 신고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시행합니다.</p> <p>-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담당자가 이를 잘 알고 매월 적기에 신설 업종코드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전파 부탁드립니다.</p>

Q22	21년 유예분과 차기년도 기관부담금 예산 추계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교육청별 신고된 방과후강사 인원 등 통계를 받아볼 수 있을런지요?
A22	- 관련 통계자료 제공은 향후 소관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내년도에 가능여부를 실무부서와 협의 부탁드립니다.

Q23	올해 납부 유예 상황이라면 7월~12월 소득신고를 12월에 일괄할 수는 없는지요?
A23	- 소득신고는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하므로 공단이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Q24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도 기존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연말정산을 하게 될 텐데, 교육자료에 연말정산 관련해서도 내용이 추가되면 좋을 듯 합니다
A24	- 내년 2월은 올해 6개월분 총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해당 금액을 참고하시면 되고, 연말정산 관련은 국세청 관할 업무로 공단이 직접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Q25	소득신고를 국세청, 근로복지포털에 양쪽 2군데 하는 것이지요?
A25	- 네, 맞습니다.

## (방과후학교 강사) 17개 시·도관내 교육지원청 Q&A

<'21.7.26.(월) 근로복지공단 전국민고용안전망강화추진TF>

Q1	그럼 매월 취득, 상실 신고를 해야한다는거죠?
A1	- 당연적용자로 취득신고 이후 계약종료, 월보수액 80만원미만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상실신고하고, 이후 다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취득 신고합니다.
Q2	2022년 3월 이후부터는 고지나 납부 유예가 없이 매월 고지되고 납부하나요?
A2	- 네, 22년 1월분 보험료부터는 납부 유예 없이 매월 월별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즉, 22년 1월 취득된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월보수 통보를 22.2월말까지 하고, - 공단은 1월분 보험료에 대해 3.15일에 보험료를 산정하여 4.10일 납부기한으로 고지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다만, 월보수 통보를 2.15일 전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2.15까지 처리한 경우에는 3.10일 납부기한으로 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강사님 월 보수가 80만원을 넘었다 안 넘었다 한다면 그때마다 취득상실신고를 반복해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보수신고만 하면 공단에서 취득상실을 자동으로 해주시나요?
A3	- 네, 월보수가 80만원 이상이면 당연적용으로 취득 신고하였다가 이후 매월 80만원 이상이면 계속 취득 상태로 두시고, 80만원 미만으로 월보수액이 변경되면 상실신고 대상입니다. - 이 경우 상실신고 하지 않고 월보수액 통보를 하게되면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인 종사자에 대해서는 공단이 직권상실처리 하게 됩니다. - 다만, 국공립의 경우 21년 하반기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취득 신고하고(이후 계약종료 시 상실신고) 월보수액을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Q4	a학교, b학교에 대해 노무제공자가 합산신청해서 수락되었을 경우, 고지와 통지가 a학교, b학교 모두 간다고 하셨는데 그럼 보험료도 각자 납부할 수 있도록 금액이 분할되나요?
A4	<p>- 22.1월부터 시행되는 소득합산 신청의 경우(종사자 신청함) 각각 사업주 및 특고 당사자에 취득 사실이 통지되고, 보험료 고지서는 사업주 각각에게 고지됩니다.</p> <p>* 토탈서비스 내 종사자 개인별 보험료 산정 내역(부담분 포함)이 제공됨</p>

Q5	외국인 강사의 경우도 적용이 되나요?
A5	<p>- 외국인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안을 마련하여 올 하반기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p> <p>- 개정 전까지는 체류자격 코드 영주, 거주, 이민결혼(F-2, F-5, F-6)에 한정하여 신고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는 처리가능합니다.</p> <p>- 다만 그 외 체류자격은 개정법령에 따라 임의가입 등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오니 법령 개정사항을 보시고 차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p>

Q6	근로자의 고용보험은 매년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을 하게 됩니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의 경우, 매달 월보수액 통보 절차 외에 보수총액신고하는 과정은 없는지요?
A6	<p>- 현재 법령상 보수총액신고를 연단위로(매년 3월15일 기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고의 경우 월보수 통보를 통해 매월 정산을 하고 있어 보수총액신고할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월보수액 통보를 누락한 경우,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월보수를 (다시) 통보하여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p>

Q7	중학교 강사인 경우 1년을 계약하지만 학기중만 하고 여름방학 중 운영하지 않아 강사료가 발생하지 않음. 이 경우에도 월 강사료가 0원으로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하는지요?
A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았는지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달은 해당월 초일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때 상실신고(상실사유코드 43번)하지 않고 월보수액을 0원으로 통보하시면 공단에서 피보험자격을 직권상실처리하게 됩니다.</li> <li>- 만약, 월보수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장최근에 신고된 월보수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므로 월보수액 신고를 통해 자격관리 및 보험료 산정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li> </ul>
Q8	65세 이상 방과후강사입니다. 현재 다른 사업장에 65세 미만부터 방과후강사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이미 가입되어있는 상태인데 65세 이상이라 교육지원청에서 가입할필요 없는건가요?
A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시행일 전부터 65세 미만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었고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21.7월 법 시행당시 노무제공을 하고 있는 강사님의 경우 적용 대상입니다.</li> </ul>
Q9	공립교에서 80만원, 사립교 80만원 이상의 강사료를 받는 강사의 경우는 공립, 사립 2개의 특고가입이 되는 것이지요?
A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 맞습니다.</li> </ul>
Q10	80만원 미만 보수신고를 할 경우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하신다 했는데 다음 달에 80만원 이상이 넘게 되면 매번 취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A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달에 80만원 이상이 되면 취득신고 하고, 이후 월보수가 계속하여 80만원 이상이면 취득상태로 지속되며, 80만원 미만으로 감소되면 상실신고 대상입니다.</li> </ul>

Q11	2021.7-12월 월별보험료에 대한 납부는 22.2월에 고지서가 발급된다는 말씀이 신지요? 21.7-12월은 고지서 발급이 없다는건지요?
A11	네, 고용노동부의 21년 7월~12월 월별보험료 납부유예 지침시달에 따라 22.2월에 6개월분의 보험료를 산정하여 건강보험공단이 3.10 납부기한으로 고지서를 송부합니다.
Q12	A학교, B학교 수업을 나가시는데 합한 보수액이 80미만이고 C학교에서 학교장과 계약하여 받은 보수가 합하여 80만원이 넘을 경우 강사가 합산 신청을 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하셨는데 합산신청을 하였는지 교육지원청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80만원이 넘는지 확인이 바로 어려울수 있을거 같습니다.
A12	22.1월 시행하는 소득합산 신청은 중복기간 초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에 따라 공단이 합산소득이 80만원 이상인지 확인 후 각 사업주별로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사업주 각각 모두(A,B,C)와 종사자에게 취득되었음을 통상 5일 이내 통지하게 됩니다.
Q13	서울시에 있는 공립교에서 80만원, 경기도에 있는 공립교에서 80만원을 받으면 각각 특고가입인가요?
A13	- 네, 맞습니다. 질문의 경우 사업주별 각각 취득 대상입니다.
Q14	서울 공립교에서 50만원, 경기 공립교에서 40만원을 받는다면 강사가 합산신청을 해서 특고가입을 하게 되나요?
A14	- 네, 22.1월 시행되는 소득합산 신청자의 경우 노무제공자가 중복기간의 초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였다면 취득 대상입니다. - 이 경우 특고로서 고용보험 당연적용자로 타 사업주에게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Q15	지자체가 달라도 공립이면 강사가 합산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A15	- 공립의 경우 시도교육청(=사업주)이 다르다면 사업주가 다른 것이므로 합산신청 대상입니다.

Q16	강사가 합산신청을 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월보수액은 강사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지요?
A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1.1.부터 시행되는 소득합산 신청에 따르는 경우에는 처음 신청 당시는 노무제 공계약서 등 월보수가 합산하여 80만원이 넘는 것을 특고 본인이 증명하여야 하며,</li> <li>- 취득 이후에는 사업주가 각각 매월 월보수액을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li> </ul>